

의안번호	제 2011 - 2 호
의 결	2011. 2. 9.
연 월 일	(제31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목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	2
1. 사건 접수	2
2. 처리 현황	8
Ⅱ.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4차 공청회 결과 보고	13
1. 공청회 개요	13
2. 발표 내용	13
Ⅲ.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보고	15
1. 개요	15
2. 양형기준안별 회신의견 종합	16
IV. 전문위원 업무지원 ····································	64
\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64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64
2. 서면 질의 및 회신	65

1. 양형기준 시행 관련 보고

1. 사건 접수

○ 8개 범죄 양형기준이 시행에 들어간 2009. 7. 1. 부터 2010. 12. 31.까지 법원에 접수된 8개 범죄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단일범 내지 동종경합범 ◈

버지크	ui H 국 I 대	2009년	2010년				
범죄군	세부죄명	하반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살인		219	-	-	219	
	살인미수	188	324	-	-	324	
살인죄	존속살해	10	16	-	-	16	
	존속살해미수	6	14	-	-	14	
	전체	329	573	-	-	573	
	뇌물공여	248	215	290	21	526	
	뇌물수수	139	130	193	0	323	
	부정처사후수뢰	8	7	4	0	11	
뇌물죄	수뢰후부정처사	4	11	4	0	15	
 귀돌꾀	제3자뇌물교부	10	15	16	0	31	
	제3자뇌물취득	3	10	11	1	22	
	특가법(뇌물)	34	73	2	0	75	
	전체	446	461	520	22	1,003	
	강간	37	85	1	0	86	
	강간살인	1	-	-	-	-	
	강간상해	46	121	0	0	121	
	강간치사	-	1	0	0	1	
성범죄	강간치상	142	255	0	0	255	
	강도강간	6	3	0	0	3	
	강제추행	282	47	294	290	631	
	강제추행상해	13	28	1	0	29	

버지그	세부죄명			201	0년	
범죄군	세구띄당	하반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강제추행치상	53	77	6	0	83
	미성년자의제강간	6	13	0	0	13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1	0	0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2	3	18	1	2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94	156	2	6	164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2	1	0	0	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3	41	0	0	41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59	38	0	0	38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58	44	8	2	54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8	7	0	0	7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17	60	0	0	6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1	17	0	0	1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8	32	1	0	33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4	6	0	0	6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	5	0	0	5
	성폭력범죄(특수강간)	122	104	0	0	104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1	21	0	0	21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0	8	0	0	8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28	47	0	0	47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	2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184	1	0	18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	48	0	0	48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	61	0	0	6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48	4	0	52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	5	0	0	5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	131	1	0	13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	6	0	0	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23	0	0	2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4	0	0	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	103	0	0	103

버지그	세부죄명		2010년				
범죄군	세구의병	하반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	13	0	0	1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3	1	0	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	40	0	0	40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	506	7	37	550	
	준강간	27	84	0	0	84	
	준강간치상	3	8	0	0	8	
	준강제추행	64	14	81	44	139	
	준강제추행치상	2	-	-	-	-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227	50	2	9	61	
	전체	1,661	2,554	428	389	3,371	
	강도	41	64	0	-	64	
	강도살인	6	6	0	-	6	
	강도상해	251	332	1	-	333	
	강도치사	-	4	0	-	4	
	강도치상	16	15	0	-	15	
강도죄	준강도	37	42	0	-	42	
	준특수강도	5	7	0	-	7	
	특가법(강도)	5	4	0	-	4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2	0	-	2	
	특수강도	146	228	5	-	233	
	전체	509	704	6	-	710	
	배임	342	8	359	70	437	
	업무상배임	167	15	245	72	332	
-1-1	업무상횡령	1,132	53	1,396	420	1,869	
횡령 • 배임죄	특경가법(배임)	90	158	4	0	162	
	특경가법(횡령)	100	238	8	0	246	
	횡령	1,148	19	1,179	540	1,738	
	전체	2,979	491	3,191	1,102	4,784	
	모해위증	8	0	12	0	12	
위증죄	위증	811	18	1,023	259	1,300	

범죄군	세부죄명	2009년	2010년				
검적군		하반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위증교사	50	4	182	12	198	
	전체	869	22	1,217	271	1,510	
	무고	966	35	1,219	366	1,620	
무고죄	특가법(무고)	5	3	0	0	3	
	전체	971	38	1,219	366	1,623	
	총계		4,843	6,581	2,150	13,574	

◈ 이종경합범(8개 범죄가 대표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

버지그	내브지대	2009년	2010년				
범죄군	세부죄명	하반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살인	59	117	-	-	117	
	살인미수	81	110	-	-	110	
살인죄	존속살해	10	7	-	-	7	
	존속살해미수	1	3	-	-	3	
	전체	151	237	-	-	237	
	뇌물공여	61	112	105	2	219	
	뇌물수수	29	53	82	0	135	
	부정처사후수뢰	4	19	2	0	21	
	수뢰후부정처사	6	22	3	0	25	
뇌물죄	제3자뇌물교부	4	13	8	0	21	
	제3자뇌물취득	1	8	6	0	14	
	특기법(뇌물)	23	66	0	0	66	
	전체	128	293	206	2	501	
	강간	61	109	0	0	109	
	강간살인	1	2	0	0	2	
성범죄	강간상해	45	68	0	0	68	
[6급기	강간치사	-	1	0	0	1	
	강간치상	56	87	0	0	87	
	강도강간	14	14	0	0	14	

버지그	내브지머	2009년		201	0년	
범죄군	세부죄명	하반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강제추행	145	39	187	94	320
	강제추행상해	4	8	0	0	8
	강제추행치상	22	48	3	0	51
	미성년자의제강간	2	9	0	0	9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2	0	0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	3	2	1	6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5	111	0	0	111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3	4	0	0	4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30	31	0	0	31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47	32	0	0	32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8	9	0	0	9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8	7	0	0	7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70	56	0	0	56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5	32	0	0	3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7	26	1	0	2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4	0	0	4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	12	0	0	12
	성폭력범죄(특수강간)	84	80	0	0	80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100	68	0	0	68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3	10	0	0	10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21	16	0	0	16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74	1	0	7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	35	0	0	3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	31	0	0	3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10	2	0	12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	7	0	0	7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	56	2	0	58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	27	0	0	27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14	0	0	14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1	0	0	1

ᆔᅱᄀ	세부죄명			201	0년	
범죄군	세무쇠명	하반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	82	0	0	8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	59	0	0	5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	12	0	0	1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	11	0	0	1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	1	0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	233	1	1	235
	준강간	11	27	0	0	27
	준강간치상	1	6	0	0	6
	준강제추행	11	3	20	3	26
	준강제추행치상	1	1	0	0	1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78	26	0	2	28
	전체	948	1,604	219	101	1,924
	강도	62	81	9	-	90
	강도살인	15	30	0	-	30
	강도상해	233	353	4	-	357
	강도치사	1	4	0	-	4
	강도치상	16	32	0	-	32
강도죄	준강도	20	46	2	-	48
9.14	준특수강도	2	8	1	-	9
	특가법(강도)	3	8	0	-	8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	7	0	-	7
	특강법(특수강도)	2	-	-	-	-
	특수강도	176	313	8	-	321
	전체	534	882	24	-	906
	배임	34	11	130	4	145
	업무상배임	114	58	240	20	318
횡령 •	업무상횡령	388	87	725	103	915
배임죄	특경가법(배임)	60	168	3	0	171
	특경가법(횡령)	95	263	4	0	267
	횡령	286	39	661	136	836

범죄군	세부죄명	2009년		201	0년	
검색正	세구석당	하반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전체	977	626	1,763	263	2,652
	모해위증	4	0	6	0	6
위증죄	위증	51	18	86	4	108
비우지	위증교사	-	3	28	0	31
	전체	55	21	120	4	145
	무고	177	40	358	63	461
무고죄	특가법(무고)	1	4	0	0	4
	전체	178	44	358	63	465
	총계	2,971	3,707	2,690	433	6,830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 준이 적용될 사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2009.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8개 범죄 사건(단일범, 경합범)으로 서 2010. 12. 31. 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범죄군별 처리건수

종국년	범죄군			사건구분		전체
- 등독년 -	김지근		고합	고단	고정	전세
	살인죄	수	286	0	0	286
2009년	글인지	비율	100.0%	0.0%	0.0%	100.0%
	니므지	수	46	73	1	120
하반기	뇌물죄	비율	38.3%	60.8%	0.8%	100.0%
	성범죄	수	960	96	60	1,116

조기너	비지그			사건구분		TJ =11
종국년	범죄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
		비율	86.0%	8.6%	5.4%	100.0%
	71 [▼]	수	563	1	0	564
	강도죄	비율	99.8%	0.2%	0.0%	100.0%
	히려 베이지	수	101	990	286	1,377
	횡령·배임죄-	비율	7.3%	71.9%	20.8%	100.0%
	이즈지	수	6	310	41	357
	위증죄	비율	1.7%	86.8%	11.5%	100.0%
	ㅁㄱ지	수	6	252	92	350
	무고죄	비율	1.7%	72.0%	26.3%	100.0%
	지네	수	1,968	1,722	480	4,170
	전체	비율	47.2%	41.3%	11.5%	100.0%
	살인죄	수	736	0	0	736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죄	수	548	512	15	1,075
	시출기	비율	51.0%	47.6%	1.4%	100.0%
	성범죄	수	3,294	366	269	3,929
	8님시	비율	83.8%	9.3%	6.8%	100.0%
	강도죄	수	1,421	2	0	1,423
2010년	3조기	비율	99.9%	0.1%	0.0%	100.0%
2010년	횡령·배임죄-	수	719	4,437	1,097	6,253
	왕양.매남지	비율	11.5%	71.0%	17.5%	100.0%
	위증죄	수	41	1,272	192	1,505
	119기	비율	2.7%	84.5%	12.8%	100.0%
	무고죄	수	45	1,311	339	1,695
	十上刊	비율	2.7%	77.3%	20.0%	100.0%
	전체	수	6,804	7,900	1,912	16,616
	[[[[]	비율	40.9%	47.5%	11.5%	100.0%

☞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버지그	네브지더	종극	종국년	
범죄군	세부죄명	2009년	2010년	전체
	살인	105	315	420
	살인미수	170	382	552
살인죄	존속살해	7	26	33
	존속살해미수	4	13	17
	전체	286	736	1,022
	뇌물공여	59	558	617
	뇌물수수	46	280	326
	부정처사후수뢰	2	26	28
	수뢰후부정처사	2	27	29
│뇌물죄 ├	제3자뇌물교부	3	50	53
	제3자뇌물취득	4	32	36
	특가법(뇌물)	4	102	106
	전체	120	1,075	1,195
	강간	38	128	166
	강간살인	1	0	1
	강간상해	49	174	223
	강간치사	0	2	2
	강간치상	104	313	417
	강도강간	4	24	28
	강제추행	127	548	675
	강제추행상해	11	39	50
성범죄	강제추행치상	40	115	155
	미성년자의제강간	3	16	19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4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9	19	28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24	302	426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4	3	7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0	83	123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50	90	140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7	82	109

비지그	ul H 국IO	종국년		TJ AU
범죄군	세부죄명		2010년	전체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11	18	29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15	168	283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6	57	83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3	69	9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	7	9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	10	14
	성폭력범죄(특수강간)	91	165	256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60	132	192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1	21	32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	54	61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154	154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41	4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59	5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27	27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9	9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137	137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21	2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26	2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4	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56	56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45	4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7	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17	17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419	419
	준강간	7	56	63
	준강간치상	2	10	12
	준강제추행	32	104	136
	준강제추행치상	1	3	4
	청소년성보호법	1	0	1

ᆈᅱᄀ	세부죄명	종국년		저훼
범죄군		2009년	2010년	전체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92	88	180
	전체	1,116	3,929	5,045
	강도	66	159	225
	강도살인	10	33	43
	강도상해	238	570	808
	강도치사	1	4	5
	강도치상	15	54	69
강도죄	준강도	43	92	135
8포피	준특수강도	8	14	22
	특가법(강도)	4	12	16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9	11
	특강법(특수강도)	0	1	1
	특수강도	177	475	652
	전체	564	1,423	1,987
	배임	111	513	624
	업무상배임	71	439	510
횡령·	업무상횡령	602	2,484	3,086
	특경가법(배임)	27	190	217
배임죄	특경가법(횡령)	33	334	367
	횡령	533	2,293	2,826
	전체	1,377	6,253	7,630
	모해위증	3	14	17
이즈지	위증	296	1,260	1,556
위증죄	위증교사	58	231	289
	전체	357	1,505	1,862
	무고	349	1,687	2,036
무고죄	특가법(무고)	1	8	9
	전체	350	1,695	2,045
	총계	4,170	16,616	20,786

Ⅱ.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4차 공청회 결과 보고

1. 공청회 개요

○ 일시 : 2011. 1. 20.(목) 13:30~19:0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5호(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

○ 참석자 : 총 120여명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양형위원회 위원: 구욱서, 서석호, 성낙송, 이민걸, 조건호,

한상대, 김광태(상임위원)

- 전문위원 : 강영수(수석전문위원), 강우예, 서봉규, 심재철, 정준화, 조은경, 홍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판사, 변호사, 법학 전문대학원 학생 등
- 국방부,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 등

2. 발표 내용

제 목	발표자/토론자/답변자	
● 개정 형법 시행 등에 따른 양형기 준 수정안, 공무집행방해 / 마약 / 사기 /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안 종 합발표	/ 가역수 수선저무의임	
● 개정 형법 시행 등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지정토론	지정토론	남현우, 정승환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	지정토론	김성돈, 이주형

●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	지정토론	최석윤, 최승재
● 사기,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	지정토론	이현종, 조순열
● 종합토론	종합토론	남현우, 정승환, 김성돈, 이주형, 최석윤, 최승재, 이현종, 조순열,

Ⅲ.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보고

1. 개요

● 개정 형법 시행 등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공문서, 식품·보건, 약취·유인, 절도, 공무집행방해, 마약, 사기, 사문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 규칙 제11조에 따라 법원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2011. 2. 1. 기준)

● 조회 내역

- 대상 기준안
 - 제3차 공청회 개최결과와 전문위원단 검토내용을 토대로 양형위원 회 제30차 회의(2010. 12. 21.)에서 수정 심의를 마친 공문서, 식품·보건, 약취·유인,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
 - 제30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제4차 공청회 대상으로 확정된 양형 기준안(공무집행방해, 마약, 사기, 사문서범죄의 범죄군) 및 개정 형 법 시행 등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 조회 기간 : 2010. 12. 24. ~ 2011. 1. 24.
- 회신 기관
 - 12개 기관 : 대상기관(40개) 중 11개 기관 및 비대상기관 중 1개 기관
 - 대상기관 : 국방부,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대검찰청, 대법원, 대한법 무사협회, 대한송유관공사,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식 품의약품안전청,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교정학회, 한 국여성의전화
 - 비대상기관 : 국가정보원(국제범죄정보센터)
- 회신자료
 - 별첨「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2. 양형기준안별 회신의견 종합

- 가.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국방부
 -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무기징역이 가능한 형량을 종전 15년에서 25년으로 높인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법관 재량의 존중과 구체적 사건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종전 15년을 유지하거나 20년 정도 로 높이는 것이 타당
 - 국회(여성위원회)
 - ▶ 별다른 이견 없음
 - 대검찰청
 -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제1유형 기본영역은 최소한 '5년~8년' 또는 '6년~9년'으로, 제2유형 기본영역은 '10년~14년', 감경영역은 '7년~11년'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이 타당
 - 제2유형의 가중영역, 제4유형의 기본영역, 제5유형의 기본영역 에 무기징역형 규정을 추가함이 타당
 - 유기징역·무기징역·사형의 형종 선택기준을 제시함이 타당
 - 제3유형 내지 제5유형의 가중영역 형량범위는 각각 '15년~30년, 무기, 사형', '20년~30년, 무기, 사형', '25년~30년, 무기, 사형'인바, ①유기징역·무기징역·사형의 형종 선택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② 형량범위 폭이 지나치게 넓어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은 사실상 무의미

▶ 기타 의견

- 살인미수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표 표시 및 양형 상향조정 필요
 - 미수범의 형량범위는 기수범의 형량범위를 일정 비율로 감경 한 범죄에 해당하나, 지나치게 복잡하여 적용상 혼란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기준표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 법률상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 임의적 감면사유인 '불 능미수', 임의적 감경사유인 '장애미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 적으로 형량범위를 감경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형량범위를 제시
 - 실무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미수의 경우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함에도, 제1유형의 감경·기본·가중영역과 제2유 형의 감경영역의 하한은 모두 법정형 하한을 1/2 감경한 '징 역 2년6월'보다 낮은 형량을 포함함으로써 '살인의 고의'와 '실 행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법정형 하한을 2중으로 감경한 형 량을 권고하는 것은 부당
 - 현행 양형기준상 성범죄 또는 강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 우 일부의 권고 형량범위는 다음과 같음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간/주거침입 · 특수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 간	5년 - 8년	6년 - 9년	7년 - 11년

[13세미만 대상 상해/치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제추행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강제유사성교	5년 - 8년	7년 - 10년	8년 - 12년
강간	7년 - 10년	9년 - 13년	11년 ~ 30년, 무기

[강도 상해/치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도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특수강도	3년 - 6년	4년 - 7년	6년 - 10년

- 위와 같은 범행들 중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상정하여 각 감경영역 형량범위를 살인미수에 대한 기본영역 형량범위와 비교해보면, 예컨대 주거침입을 통해 강간하려다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치고 통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 권고 형량범위는 '5년~8년'이므로 그 하한은 살인죄 제1 내지 제3유형에이르는 미수범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모두 높은현상이 발생하며, 강간행위가 기수인 경우에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6년)이 제4유형 살인미수의 형량범위(5년8월 14년8월)의 하한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초래
- 마찬가지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통상의 상해를 입힌' 13세미만 대상 강제유사성교와 강간의 경우 각 감경영역 형량범위는 "징역 5년~8년", "징역 7년~10년"로서 '보통 동기로살해하려다 통상의 상해를 입힌'제2유형 살인미수의 기본영역 형량범위(징역 3년~8년8월)과 비교할 때 형량범위가 더높은바, 이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고의 + 실행행위 + 상해"보다 "살인의 고의 + 실행행위 + 상해"를 범죄의 중대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결국 강간의 고의보다 살인의 고의가 경시되고 있는 것

- 위와 같이 하한을 2/3 감경하여 낮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 은 부당
- 따라서 미수범을 감경하는 경우 법률상 감경 정도인 '1/2'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감경된 형량범위의 하한은 살 인죄의 법정형 하한의 1/2인 '징역 2년6월'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
- 한편, 장애미수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실제 피해가 중할 수 있으므로,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여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상한의 2/3을 감경하고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상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
-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처벌불원'은 일반양형인자로 보는 것이 타당
 - 피해자 자신이 아닌 유족의 의사로 형량이 낮추는 것은 불합 리하므로 일반감경요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 또한 생명의 침해는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회 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살인죄 기수범에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므로 미수범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 감경요소인 '상당금액 공탁'과 함께 '진지한 반성'의 하나의 사 례로 예시되는 것이 타당
 - '피해자 유발(강함)'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발(약함)'을 일 반감경인자로 보는 것은 부당
 - '피해자 유발'의 정의를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가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인지 불분명
 - '강함'과 '약함'은 그 개념과 적용범위가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 의 여지가 농후하므로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는 것이 타당

- '심신미약'은 모든 범죄에 있어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처리하 는 것이 타당
 -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 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명정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부당
 - 따라서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 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명정상태에 빠진 경우'는 일 반가중인자로 반영하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명정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
- '범행 후 구호호송'은 미수범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기수범의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의 하나의 예시로 보는 것 이 타당
- 양형인자 '범행의 계획성 및 잔혹성' 중시, 가중치 설정 필요
 - '범행의 계획성 및 잔혹성'을 다른 양형인자와 동등한 하나의 양형인자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
 - 다른 양형인자에 비해 현저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므로 가중치를 둠이 타당
 - 대부분 외국 입법례는 '범행의 계획성 및 잔혹성'을 중심으로 양형설정

- 대법원

-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제1유형 내지 제5유형의 정의에는 기본적으로 찬성
 -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유형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정하고 표

현한 것 때문에 실제 적용 과정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권고형량 범위를 보다 넓게 잡아서 법관들이 개개 사건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방법 제시

- 제5유형의 살인죄는 제3유형의 살인죄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제5유형의 살인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대신에 살인범죄군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가중방법을 설정하여 그 하한을 1/2 가중하는 방식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타당
- 종래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강도살인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는 감경영역(11년-13년), 기본영역(12년-15년, 무기), 가중영역(무기 이상)임에 반해 이를 수정안 제4유형에 포함시켜 감경영역(14년-18년), 기본영역(17년-22년), 가중영역(20년 이상, 무기이상)으로 변경하여 무려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 상향조정하였는바, 이와같은 급격한 형량범위 상향은 수정안 시행 전후를기준으로 형평성 문제가 따를 소지 있음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수 형량범위의 상한을 2/3 로, 하한을 1/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찬성 하나, 그로 인하여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되어 있는 제4유형의 경우 처단형의 범위와 모순되거나 기본 중대 범죄의 상해·치상(특히,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치상의 경우) 유형과 비교하여 형량범위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재검토 필요
- 제2유형 내지 제5유형은 종전보다 강화된 형량을 규정하고 있 는데 개정 형법에 따른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나치게 높게 규정되어 있다는 논란도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함이 타당(제3, 4, 5유형의 경우 종전 유기징역형 상한 15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음)

- 기존의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이 다소 낮은 듯 했는데, 수정된 양형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상한을 2/3 로, 하한을 1/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에는 찬성
- 제5유형의 경우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의 예로 3가지를 들고 있으나, 피고인의 환경, 연령, 성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함이 타당
-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강도살인죄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특수강도 범행'을, 강제추행살인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를 각 추가함이 타당
 -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양형요소인 합의 (처벌불원)의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는 있는 것은 부당
 - 강간(강도)살인과 동 치사 범죄를 분리하여 살인범죄의 양형기 준에 포섭한 것은 일응 타당한 일면이 있으나 실무상 공판에 서 살해의 고의 유무에 관해 면밀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 졌음
 - 살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에 '계획적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미필적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중한 상해', '경미한 상해 (상해 없음 포함)' 등의 가중/감경요소가 규정되어 있어, 살인 과 치사의 판단을 위해서는 역으로 위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논리적 모순 있음
- ▶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제1유형의 정의에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하여 살인 에 이른 경우'를 추가함이 타당
-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2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정의 규정은 합리적인 유형 선택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대한법무사협회
 - ▶ 찬성
-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제3유형에서 제4유형을 분리하여 형량을 상향조정한 것은 합 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
 - 제5유형은 제3유형과 비교할 때 피해자가 다수라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 약 2배 정도의 형량을 정한 것은 부적절
 -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양형인자가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하고 특별양형인 자의 가중요소로도 사용되어 '이중평가금지원칙'에 위배될 소 지가 있어 부당
 - 존속살해죄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법정형의 형기 하 한을 살인죄보다 가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양형 인자의 가중요소로 삼는 것은 이중평가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 지 있어 부당
 - ▶ 기타 의견
 - 사형의 선택과 선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제4유형, 제5유형을 추가한 유형분류에는 찬성하나 유형의 기 준이 없고 유형 분류가 불명확해졌으며 가중요소와 중복되어 부당

- 한국교정학회

- ▶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에 대하여는 찬성
 - 추가 의견
 - 제2유형에 우발살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제5유형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는 제3유형의 '별다른 이유없는 무작위 살인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와 함께 넣는 것이 타당
 - 제5유형에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지역, 정치적 신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1인 또는 대량살인한 경우'를 추가함이 타당
-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자수'에 '범행사실이나 공범사 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 살인미수의 집행유예에 대한 의견
 -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인 '공범의 범행수행저지·곤란시 도'에 '범행사실이나 공범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경우'를 포 함시키고 '중지미수'는 삭제함이 타당
 -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인 '피해회복 없음'에 '합의 없음' 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국회(여성위원회)
 -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형량범위가 법정형보다 현저히 낮아 성 범죄의 형량이 하향 평준화되어 부당
 -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일반양형인자인 감경요소로 '상당 금액 공탁'은 삭제함이 타당
 -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인 것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엄 벌을 구하는 의사'도 가중요소에 추가함이 타당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특별감경인자인 '위계/위력'은 삭제 함이 타당
 - 양형인자간의 경중을 고려한 감경·가중요소의 반영기준을 마련함이 타당
 - 성범죄에 한해 정책적으로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 된 경우'에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추가 의견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과 관련하여 양형기준 해설은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영역에서 중간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 는 일반참작사유 개수, 즉 '다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부당

- 대검찰청

-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특별양형인자인 가중요소로 '계획적·의도적 범행'을 추가함이 타당

- 대법원

-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성범죄의 경우 대표적인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형량범위의 엄 정성을 제고하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나, 지나친 유형분류의 세분화와 형량범위의 획일적인 상향조정으로 개별적인 양형의 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
 -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권고형량을 높인 것은 그 피해 법익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찬성
 - 그러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을 높인 것은 실 무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경미한 상해도 상해로 인정하고 있 고, 쉽게 의사의 진단서를 배척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다소 문제가 있음
 - 13세미만 강간상해(치상)죄의 기본영역이 살인(보통동기)죄의 기본영역과 동일하고, 그 감경영역은 오히려 13세미만 강간상 해(치상)가 더 높아 살인죄보다 성폭력범죄가 더 중하게 평가 되는 형의 역전 현상이 발생
 - 또한 13세미만 강간의 경우 경한 상해라도 발생하고 가중사유 가 하나라도 있어 가중영역에 해당하면 권고형량이 11년 이상, 무기징역이어서 지나치게 무거운 측면도 있음
-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합의나 공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피고인측이 합의시도 명목 으로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2차 피해 발생 가능 성이 우려됨
 -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와 관련하여 연령과 관련한 대체적인 기준 설정 필요(특히 연령을 기준으로 구성요건과 유형을 나누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 예컨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경우 연령을 이유로 또다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그 반대로 13세 이상의 경우에도 연령만을 이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해 통일적인 지침이 필요
- 대한법무사협회
 - ▶ 찬성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 찬성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강간치사의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 하지 않은 경우'를 감경요소로 보는 것은 부당
- 한국교정학회
 -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13세 미만 피해자가 상해나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간과 강제유사성교를 나누고 있으나 강제유사성교를 기준으 로 묶는 것이 타당
 -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찬성
- 한국여성의전화
 -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제1유형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에 '과 잉방위'를 별도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함이 타당

-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등 지속적인 피해를 준 경우'를 추가함이 타당
-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대검찰청
 -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특별양형인자인 가중요소로 '계획적·의도적 범행'을 추가함이 타당

- 대법원

-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강도범죄의 경우 대표적인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형량범위의 엄정성을 제고하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나, 지나친 유형분류 의 세분화와 형량범위의 획일적인 상향조정으로 개별적인 양 형의 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
 - 강도치사 부분만 수정하였는데 고의범인 강도살인의 양형기준 이 수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사실상 동일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양형 재량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 있음
 - 강도치사죄의 감경영역 및 기본영역의 상한·하한을 각 3년씩 높였고, 가중영역의 경우 하한을 2년, 상한을 15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였는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
-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또는 가중 요소와 관련하여 강도치사의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죄질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과실의 정도'나 '중과실 여부'를 양형인자에 추가하자는 의견 있음

- 대한법무사협회
 - ▶ 찬성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강도치사의 형량을 강간치사의 형량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은 부당
 - 강도치사의 형량을 고의범인 살인범죄 중 제3유형과 유사하게 설정한 것은 부당
- 한국교정학회
 - ▶ 찬성
- 범죄군별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 수정안
 - 국방부
 - ▶ 찬성
 - 대검찰청
 - ▶ 집행유예 기준의 평가방식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역시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권고되지 않고 법관의 재량영역에 해 당됨으로써 객관성 및 투명성은 여전히 미흡
 - 주요참작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일반참작사유의 개수 차이가 1 개만 많은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실형 권고영역에서 중간영역 으로 이동한다면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질적으로 구

분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점 있음

- 따라서 주요참작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일반참작사유의 개수 차이가 "2개 이상" 많은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
- ▶ 일반긍정참작사유의 재검토 필요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이라는 사유는 개념이 매우 불명확하여 충분한 예시를 통하여 구체화함이 타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은 구속이나 형의 집행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유이므로 참작사유에서 삭제하는 것 이 타당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은 범죄의 심각성・중대성이나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 판단과 무관하므 로 참작사유에서 삭제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한정함이 타당
 - '피고인의 고령'은 고령 여부의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고령'인 사유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를 예시하여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함이 타당
 - '진지한 반성'도 '진지한 반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정하는 것이 타당
- ▶ 개별 범죄유형의 특정요소 및 죄질 등을 평가하여 원칙적 실형권고 범죄들의 유형을 설정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가 필요

- 대법원

-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에 대한 수정에는 찬성하나, 형량기 준과 집행유예기준 사이의 본질적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추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거치고, 양형실무에 대한 분석 등을 거친 다음 수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 ▶ 집행유예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수

정안과 같이 주요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일반사유의 개수 차이가 많은 경우에만 실형권고 또는 집행유예권고를 해제시킬 수 있다고 하면 실제 판결에서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양형기준을 채택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양형인자의 개수 차이로 실형과 집행유예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는 전혀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가 유일함
- ▶ 집행유예에 관한 양형기준을 폐지하고, 미국 연방의 양형기준과 같이 "① 집행유예 전부가 가능한 징역형의 범위, ② 상당한 수준 의 사회내 처우(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를 조건으로 만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형의 범위, ③ 징역형 중 절반을 집행 유예 할 수 있는 징역형의 범위, ④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징역형 의 범위"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대한법무사협회
 - ▶ 찬성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 찬성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의견
 - '현저한 개전의 정',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 등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삭제함이 타당

나. 공문서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

- 국방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등의 경우에도 '작성한 허위 공문서를 행사

한 경우'를 일반 가중요소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

► 다른 공문서 범죄의 양형인자에는 '당해 문서의 행사'를 가중요소로 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등의 경우에는 동문서의 행사를 가중요소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

○ 대검찰청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공문서 등 부정행사 관련 일반감경요소 '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는 삭제함이 타당

○ 대법원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전체적으로 형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임.
 - ▶ 6개 유형의 공문서범죄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명 순서로 재배치함이 타당
 - 공문서등 위조・변조(형법 제225조), 자격모용 공문서등 작성(제226조),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제227조의2), 공정증서원본・공전자기록 불실기재(제228조 제1항) 및 동행사(제229조)(이상 죄는 공문서등 위조・변조 등으로 함께 살핌), 허위공문서 작성・변 개(제227조) 및 동행사(제229조), 공문서등 부정행사(제230조)
 - ▶ 공정증서원본은 공정증서원본·공전자기록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특별양형인자 중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와 일반양형인자중 '소극가담'의 구분이 불분명
 - ▶ 따라서 '소극가담' 부분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된 경우는 제외 함'이라고 명시함이 타당

- ▶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범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 득을 취한 경우' 등도 추가함이 타당
 - 가중인자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 의뢰한 경우'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더 커지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음
- ▶ 특별양형인자인 감경요소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하나의 양형인자로 묶어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두 개의 양형인자로 분리하여 특별양형인자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
- ▶ '진지한 반성'을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 공문서등 위조·변조의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사회적으로 공 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예로 각종 영업관련 인·허가 내지 등록 증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부분을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에 해당'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이 타당
-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 다수범죄처리기준의 특례를 둔 것에는 찬성
 - ▶ 다만, 공문서위조 등의 행위가 또 다른 사기범행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와 관련된 양형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 '영업적 또는 조직적이라 함은'이란 문구는 '영업적 또는 조직적이 란'으로, '공문서범죄에 있어서'란 문구는 '공문서범죄에서'로 수정 함이 타당
 -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법정형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추가함

이 타당

-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의 법정형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추가함이 타당
- ▶ 공문서등 부정행사의 법정형에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추가함이 타당
- 양형인자의 정의에 대한 의견
 - ▶ 공문서등 위조·변조 등의 경우 양형기준안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 재도 같은 유형에서 다루고 있으나 여권 위·변조와 달리 여권불실 기재는 형법 제228조 제2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양형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이 타당
 - ▶ 공문서등 위조·변조 등의 경우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경우에 해 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함'으로 수정함이 타당
 -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의 경우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인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 대한 정의를 뇌물죄의 일반양형인자 중 해당 사항에 준하여 정의할 필요 있음(제시안은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정의하고 있으나 순서를 바꿀 필요 있음)
- 집행유예기준에 대한 의견
 - ▶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를 "동종전과(5년 이내)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징계처분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기간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착오인지 의문
 - ► 또한 징계처분은 동종 사유로 인한 것으로 제한되는 것인지 이종 사유를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
- 대한법무사협회
 - 찬성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전체적으로 가중된 최고형이 법정형의 상한에 미치지 못하여 법정 형의 상한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정형 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함이 타당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제1항의 형종에 벌금형 양형기준도 필요
- ▶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구분이 불분명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인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는 공문서등 위조·변조 범죄가 그 본질이 '위험범'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양형인자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
 - ▶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인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는 단순히 접속범 또는 연속범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경합범 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
 - ▶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인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는 실무에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
 - ▶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서 '전문 위·변조장비(칼라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는 보다 전문적인 장비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
 - ▶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형량범위나 감경요소가 너무 관대하므로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의 가 중요소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
 - ► 공문서등 부정행사죄의 경우에 있어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범죄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는 것은 이 범죄의 본질이 위험범인 점 에 비추어 부당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제1유형과 제2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가중요소와 부분적으로 중복 되어 부당
- ▶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인 '농아자'는 삭제함이 타당

○ 한국교정학회

- 형종 및 형량에 대한 의견
 - ▶ 전체적으로 양형의 정도가 법정형에 비하여 너무 과소하여 부당
 - ▶ 특히 영업적 위조범의 경우 다소 상향조정함이 타당
 - ▶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하여는 찬성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공문서 위조·변조 등의 경우에 있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 지 못한 경우'에 '범행사실이나 공범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경우' 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등의 경우에 있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 소에 '수사기관에 알려 협력한 경우'를 추가함이 타당
 -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등의 경우에 있어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 소에 '허위작성·변개한 행위기간'을 추가함이 타당
- 집행유예기준에 대한 의견
 - ▶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에서 '피고인의 고령'을 삭제함이 타당

다. 식품·보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

- 국방부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인자로서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는 특별 양형인자로 분류함이 타당

○ 국회(여성위원회)

- 일반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인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는 특별양 형인자로 분류함이 타당

○ 대검찰청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허위표시 유형 관련 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는 삭제함 이 타당
 - ▶ 특별가중인자 '의약품, 화장품에 해당되는 경우'에서 '화장품'은 삭제함이 타당
 - 화장품의 경우 식품보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는 면이 있으므로 가중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
 - ▶ 부정의료행위 유형의 특별가중인자인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제2유형)'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부당
 - ▶ 일반가중인자인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는 개념 수정 필요
 - 허위표시 유형의 일반가중요소인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 대하여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반면,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의 일반가중요소인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 대하여는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허위표시 농수축산물,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은 단기간의 유통만으로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기간 2년 또는 1년 이상은 과도하 게 장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장기간의 기준을 허위표시 유형은 '2년', 그 외 유형은 '1

년'으로 달리하여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장기간의 기준을 통일하고, 범행기간을 1년 또는 6개월 이상인 경우를 일반가중요소로 함이 타당

- ▶ 허위표시 유형의 일반가중인자인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 적으로 홍보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
- 기타 의견
 - ▶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필요
 - 식품·보건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범죄이고,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역시 국민 건강 및 위생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식품·보건범죄의 경우, 복잡한 현행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유형 정의 등에서 각 유형별로 적용법조가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경 우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
 - ▶ 허위표시 유형을 가액규모로 나눈 것,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 부정의료행위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에는 찬성
 - ▶ 형량은 국민건강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형량을 높일 필요성은 공감하나, 종전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편임 (특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고의범인 살인죄의 제1유형 기본영역보다도 형량이 높음)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다른 범죄유형에 없는 특이한 양형인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바, 실무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적절하

지 않은 양형인자가 선정된 부분은 없는지 재검토 필요

- ▶ 특별양형인자 중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와 일반양형인자중 '소극가담'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소극가담' 부분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 양형인자로 고려된 경우는 제외함'이라고 명시함이 타당
- ▶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인자인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는 '단속공 무원과 결탁하여 범행의 실행에 적극적·소극적 도움을 받은 경우' 로 명확화 하는 것이 타당
- ▶ 식품 허위표시 유형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인자로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단순 허위표시 보다 단속을 어렵게 하기 위한 계획적·지능적인 수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에서 과연 감경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 식품 허위표시 유형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인자로 '사회적 신뢰 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의 예에 안흥찐빵, 횡성한우, 고창복분자, 울릉도오징어 등 향토색 짙은 지리적 표시 제품도 명시하는 것이 타당
- ▶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에 대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가 기재되어 있는데, 임산부의 경우 섭취한 식품이나 의약품이 직접적으로 태아에게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임산부용 식품'도 가중요소에 추가함이 타당
- 양형인자의 정의에 대한 의견
 - ▶ 식품·보건범죄 중 '거래처에서 납품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그 납품단가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표시 범죄를 범한 경우'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 대한법무사협회
 - 찬성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대상범죄의 선정에는 찬성
 - ▶ 허위표시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선택한 것이 적 합한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 필요
 - ► 또한 물품 가액 규모는 동일한 규모의 업소라 하더라도 영업기간 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업장의 규모나 영업 기간 등의 기준을 통하여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
 - ▶ 유해식품, 의약품, 화장품 유형 중 제3유형 내지 제5유형은 법정 형 자체의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유형을 더 세분화함이 타당
 - ▶ 부정의료행위 유형 중 제1유형, 제2유형의 범행으로 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즉,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망한 경우'와 '영업적 무면허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중 후자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감경인자 또는 가중인자 중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 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등의 개념은 추상적이므로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

○ 식품의약품안전청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무허가(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함이 타당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부당이득의 환수정도'를 양형인자로 추가함이 타당
- 기타 의견
 - ▶ 의료기기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필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허위표시 유형의 가중요소로 '노인 등 취약자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와 '유아, 어린이용 식품'을 추가함이 타당

○ 한국교정학회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허위표시 유형의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함이 타당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에서 감경인자로 '범행사실 제보'를 추가함이 타당
 - ▶ 부정의료행위 유형에서 가중인자로 '피해의 정도'를 적극 반영함이 필요
- 집행유예기준에 대한 의견
 - ▶ 식품·보건범죄 집행유예기준 중 긍정적 사유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익기금기부', '공탁', '피해자와 합의' 등을 추가함이 타당

라. 약취·유인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

- 국방부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인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와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인 '2인 이상 공동 범행'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므로 '2인 이상 공동 범행' 부분을 삭제하거나 정의를 내리는 것이 타당

○ 대검찰청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의 제1유형의 양형이 '재물을 요구 또는 취득한 경우'와 비교하여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
 - ▶ 기본형이 법정형 보다 지나치게 가볍게 책정되어 있어 부당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의 특별가중요소에 '신체 침해의 정 도가 중한 경우' 누락
 - 양형인자 설명에는 '신체 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해설이 있으나 양형인자표에는 누락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형량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별 영역별 형량범위 가 지나치게 상향 조정된 측면이 있음
 - ▶ 약취·유인 범죄들의 법정형 자체가 높아 양형의 수위는 적절함
 - ▶ 법조문체계에 따라서 '단순한 약취유인수수의 경우'와 '목적범인 경우와 약취유인한 후에 다른 범죄로 나아간 경우'로 분류하는 것 이 더 간결하고 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음
 - ▶ 양형기준안처럼 객관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약취유인, 그로 인한 상해, 재물, 사망과 같이 네 가지로 큰 분류를 하고 그 행위 안에 서 기준이 될 만한 것으로 유형을 다시 나누는 방법도 훌륭한 방 법이라는 의견이 있음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의 개수 차이가 현저하여 실질적으로 가중영역이 기본영역으로 작용될 우려가 크므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경요소에 대한 추가 발굴이 필요

- ► 제2유형인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 신체 침해 정도에 따른 구분도 추가함이 타당
- ▶ 제4유형의 특별가중인자인 '약취·유인 목적이 살인, 간음, 추행 등 비난할 만한 목적인 경우'는 4유형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
- ▶ '처벌불원', '상당한 금액 공탁'과 구분되는 사유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상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은 4유형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의문
- ▶ 각 유형에 대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외에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탁받은 자의 범행'을 가중요소로 추가함이 타당
- ▶ 미성년자의 경우 약취·유인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침해결과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상을 입은 경우도 발생하므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인 손상을 입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명된 경우'를 각 유형의 가중요소로 추가함이 타당
-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 적용범위 부분에서는 형법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형법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 ▶ 따라서 적용범위 부분에서 위 조항을 삭제하되 '※ 형법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에 의해 처벌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에 대한 의견
 -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대한 설명 중 '......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로서 아파트 승강기나 계 단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

- 대한법무사협회
 - 찬성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대상범죄의 선정에는 찬성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약취·유인만 한 경우 '양육권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감경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
 - ▶ 약취·유인죄의 경우 일반양형인자로서 '소극가담'은 '타인의 강압이 나 위협 등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일반 감경인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
 - ▶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는 찬성
 - ▶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가 '신체침해의 경우'보다 더 중한 형량이 설정된 것은 부당하고, 특별양형인자인 '실제 취득한 가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요구한 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
 - ▶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이득액과 요 구액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죄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요구액이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념을 요구액으 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
 - ▶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찬성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약취·유인만 한 경우'를 같은 양형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형법이 법정형을 달리하여 규정해 놓은 것과 조화되지 않아 부당

○ 한국교정학회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인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에 '범행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알려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마.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

- 대검찰청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피해가액'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반영 필요
 -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는 '피해가액'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최소한의 방안으로 '일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 별양형인자를 두는 것이 타당
 - ▶ '재물반환' 또는 '변상', 상습절도의 '범행횟수' 등도 양형인자로 추 가함이 타당
 - 기타 의견
 - ▶ 절도 범죄군의 경우 미수범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수범과 미수범의 선고형량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미수범은 양형인자로 반영(중지미수는 특별감경, 장애미수는 일반감경인자)함이 타당

○ 대법원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절도범죄의 경우 기존의 양형실무에 대한 규범적 비판이 크지 않은 범죄임에도 형량범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 있음
-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그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시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구분하고,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의 절도'를 다시 그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에 속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구분이 불분명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 감경영역의 경우에는 상한이 6월 이고, 기본 유형의 경우에는 상한이 8월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 이 다투는 경우에는 1, 2심을 합하여 10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만약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재 판 도중에 위 기간을 도과해 버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 각 영역 의 상한은 1년 이상이 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있음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는 상습절 도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 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습·누범 절도의 가중영역의 상한을 7년으 로 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하는 법정형으로 모두 포섭할 수 있 도록, 가중영역의 상한을 없애거나, 7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음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를 4가지 유형으로,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2가지 유형으로, 상습·누범절도를 2가지 유형으로 각 구분한 것에는 동의하나 대인절도와 침입절도의 경우 불법요소의 형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두 유형에서의 기본형량 자체가 기존의 상습절도의 형량과 비슷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수위가 높음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절도범죄 전반에 걸친 일반감경요소 추가가 필요
 - ▶ '피해품이 단기간 내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우'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선택적인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로 추가하는 것

- 이 타당(즉, "처벌불원 또는 피해품이 범행일로부터 단기간 내 그 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우" 정도의 문구가 될 것임)
- ▶ 일반 국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재산을 절취하는 경우, 예컨 대 하수관 뚜껑이나 다리 난간과 같은 것을 떼어내거나 잘라서 절취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물건에 대한 절도는 가중요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있음
- ▶ 절도 범행의 결과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를 가중요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음
- ▶ 횡령·배임범죄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 있음
 - 같은 재산범죄인 횡령·배임범죄에 대하여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가 규정 되어 있으나 절도범죄 양형기준안에는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에 '처벌불원'만이 있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도 감경요소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 -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 "제1유형, 제2유형 중,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 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1.5배 가중한다."는 부분은 "3.상습·누범 절도"의 형량범위표 아래에 이미 부기한 부분이므로 삭제함이 타당

- 기타 의견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 기업비밀 자료의 절도를 포함한 것은 적절하나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특별양형인자에는 기업비밀 절도의 경우에 적용할 만한 가중요소는 없으므로 기업비밀 절도와 관련하여 가중요소로 '경쟁회사로부터 거액의 보상(취업에 따른 높은 보수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포함)을 받기로 하고 기업비밀 관련 자료를 절취한 경우'를 양형인자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

- 대한법무사협회
 - 찬성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양형인자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계획적 범행' 등을 추가함이 타당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에 있어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인자에 '비난 동기에 의한 경우'를 추가함이 타당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에 있어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인자인 '개인적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 우'가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는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명이 필요
 - ▶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단순히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제2유형 개념정의 중 '높은'과 '매우 높은'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구체적 기준 설정이 필요

○ 한국교정학회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찬성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에서 가중요소로 '차량등을 이용한 절도'를 추가하거나 제3유형에 독립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 상습·누범절도에서 감경요소로 '공범사실을 제보하여 수사협력 및 추가범행을 방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함이 타당

-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에서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 밀 관련 자료의 절도'를 제외함이 타당
- 집행유예기준에 대한 의견
 - ▶ 긍정적 사유로 '피해액이 경미함'을 추가함이 타당
- 한국송유관공사
 - 찬성

바.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

- 대검찰청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벌불원' 처리 방식 재고 필요
 - '중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 이에 대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 인자로, '보통 상해'를 일반가중인자, 이에 대한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로 하게 되면, 합의 시 가중인자와 감경인자가 상 쇄되어 상해행위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불합리 발생
 - 따라서 '보통 상해'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은 양형인자로 반영 하지 아니함이 타당
 - '중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감경인 자로 반영하되, '일반'감경인자 수준으로 반영함이 타당
 - ▶ 공용물 무효·파괴조의 경우 특별가중인자에 '무효·파괴된 물건이 다수인 경우',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중대한 경우'를 추가함 이 타당
 - 양형인자의 정의에 대한 의견
 -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의 '3년 이내 3회 이상' 제한은 지나치 게 제한적이므로 '3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으

로 완화하여 규정함이 타당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기본형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높은데 가중형은 공무집행방해가 더 높게 되어 있어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의견 있음
 - ▶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특수공무방해치사'는 형량범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부당
 -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죄의 가중영역의 상한이 같은 죄의 감경/기 본영역, 위계공무집행방해죄/공용물무효죄의 가중영역의 상한에 비추어 다소 높아 부당하므로 4년을 3년으로 낮추는 것이 타당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특별가중인자인 '반복적 범행'은 그 개념 및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발생되거나 또는 범죄자 의 습벽에 기한 동일한 사유가 위 인자와 전과의 반영방식을 통해 이중으로 가중 평가될 우려가 있어 부당
 -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인데 '처벌불원' 등을 양형기준으로 삼는 것 은 부당
 - ▶ 공용물무효·파괴범죄에서 감경요소 또는 가중요소인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나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별도의 감경요소 또는 가중요소로 규정하는 것에 재검토 필요
 - ▶ 공용물무효·파괴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공용물무효·파괴죄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주체와 상해의 결과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를 명확히 함이 타당
 - ► 공무집행방해의 특별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 '파괴된 물건의 피해회복'을 일반양형인자의 행위자/기타 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제1항)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대한법무사협회
 - 찬성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 중 '발생빈도'만을 고려하여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 는 범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양형기준을 제시함이 타당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특별양형인자로 규정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의 가중요소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 공무집행방해의 가중요소이기 이전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할 것이 아니 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등을 분류 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미 형법상의 법률상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시 양형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의 특별양형인자인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는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 운 경우에 해당하여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와 구분이 어려움
 - ▶ 행위자요소로서 '심신미약'을 본인 책임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형법에서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양형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부당
 - 양형인자의 정의에 대한 의견

-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등은 추상적이거나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표현으로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함이 타당
- ▶ '동종누범'에 대한 개념정의는 마련되어야 함이 타당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권고형량의 폭이 너무 넓어서 개선 필요

사.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

- 대검찰청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수사협조 관련 감경인자 강화 필요
 - 서술식 기준으로 "자기 범죄와 관련된 상선 진술 등 자발적, 적극적 수사협조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감경인자로 "자기 범죄와 관련 없는 중요한 수사협조(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인해 조직적 범행 적발에 성과 를 거둔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그 외 일반 수사협조"를 규 정함이 타당
 - '수사에 협조'를 양형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 '자신의 감형을 위하여 허위의 마약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취득한 이익의 다과', '범죄수익의 은닉 여부', 수출입·제조의경우 '실제 유통 여부'도 이를 가중 또는 감경요소로 규정함이 타당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범행의 태양 등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면서 대량범에 관한 별

도의 유형을 추가한 기준안의 유형분류 방식에 동의

- ▶ 마약범죄의 경우 기준안의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부당
 -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 중 제2유형(대마 등) 감경영역의 하한 이 6월로 설정되어 있으나, 4월 정도가 적절하며, 매매·알선 등 유형 중 제2유형(필로폰, 대마 등) 기본영역의 하한 역시 1년으로 설정하였으나, 10월 정도가 적절함
 - 매매·알선 등 유형, 수출입·제조 유형의 제3유형의 법정형이 5 년 이상, 제4유형의 법정형이 10년 이상이고, 대량범 유형 제3 유형의 법정형이 10년 이상인바, 현행 양형기준 중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유형의 형량범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부당
 - 제3유형과 제4유형은 검사가 기소하는 적용법조에 따라 정해 질 가능성이 많고, 제4유형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 중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가중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 ▶ "2. 매매알선 등"의 "3.마약, 향정 가.목 등"은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형량범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기본영역을
 3년 ~ 6년, 가중영역을 4년 ~ 7년 으로 조정함이 타당
- ▶ "3.수출입제조 등"의 "3.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도 형량범위 를 낮추어 조정함이 타당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특별감경인자인 '마약범죄 정보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
 -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요건의 충족 여부를 수사기관의 의사와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수사기관의 편의 에 따라 위 기준이 남용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움
 - 현행법상 위와 같은 감경사유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

고,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과 같은 기존의 감경인자와 상당부분 중복 평가될 우려가 높음

- ▶ 마약범죄 '전과' 반영방식 관련 의견
 -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서만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 년 이내 집유 이상)", 일반가중인자로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상 집유 이상)"으로 '전과' 반영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 법관이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형을 선택하는 과정에 서 전과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함
- ▶ 투약・단순소지 등에 있어서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인 '마약범죄 정보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를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서 마약범죄 정보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로서 거짓이 아니라고 평가되는 경우'로 수정하자는 의견 있음
- ▶ 매매·알선 등에 있어서 특별양형인자인 감경요소에 '매수 또는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타인에게 매도, 매도알선, 교부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자는 의견 있음
- ▶ 투약, 단순소지 및 매매알선 등 영역에서, '수사협조'를 특별양형 인자로 삼는 것은 심히 부당
- ▶ 수출입, 제조, 대량범과 달리 투약, 매매알선 등 영역에서는 '수사 협조'를 일반감경인자로 삼는 것으로 충분
- 유형의 정의에 대한 의견
 - ▶ 투약·단순소지 등에 있어서 대마 등의 경우 그 기본형량 하한을 각각 6월과 8월로 하향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있음
 - ▶ 매매·알선 등의 제3유형에서 마약 또는 법 (가)목 유형의 범죄 하 한 4년을 3년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있음
 - ▶ 매매·알선 등의 제4유형 중 상습범은 제3유형의 상습범을 의미한 다고 이해되는데, '자신만 투약할 생각으로 제3유형의 마약 등을 매수 또는 수수한 경우' 등이 상습범이라고 평가되는 경우를 구분

하지 않고, 모두 제4유형의 상습범과 같은 권고형을 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 있음

- ▶ 다. 소극가담 중 두 번째 부분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집행방해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 다.'는 공무집행방해죄에 관련된 부분이고, 투약·단순소지와는 무관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대한 의견
 - ▶ 가중방법으로 동종 경합범, 이종 경합범을 구분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의 양형기준상 이종 경합범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일정 범위 합산 처리기준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오히려마약류 취급 사건은 대부분 동종 경합범인 경우가 많고, 위와 같이 일련의 과정에서 마약류를 수회 취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은 것을 큰 것에 흡수하여 형을 고려하되, 큰 것 하나만있는 경우보다 다소의 양형 차별을 두어 왔다고 이해되는 종래의양형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견해 있음
-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의견
 - ▶ 일반참작사유의 부정적 사유 중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10년 이내 3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있음
 - ▶ "적극적 수사협조"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협조가 이루어 진 경우로서 자신의 범행 이외의 다른 범행의 유죄입증을 위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경우'로 제한하여 보는 것이 타당
- 대한법무사협회
 - 찬성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찬성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기타 의견
 - ▶ 마약소비자를 처벌만 하기 보다는 치료감호를 하는 것도 필요

○ 국가정보원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기준안 형량의 전반적인 상향 조정 필요
 - ▶ 필로폰·코카인등 특정 마약에 대한 형량은 별도 구분함이 타당
 - ▶ 수출입·제조는 매매·알선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형량을 상향 조정함이 타당
 - ▶ 대량범 유형의 구성요건은 '가액'이 아닌 '수량'으로 구분함이 타당
 - 마약가격은 마약 종류별, 거래지역, 도소매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상이하므로 기준가 책정이 불가능함
 - 따라서 대량범의 구성요건을 '수량'으로 대체하되, 마약별로 사용 량 및 효과의 정도가 상이함을 감안하여 필로폰·대마초등 주요 마약류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하여 적정 형량을 책정함이 타당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범행가담 및 범행동기 외에도 사전모의 범행자금의 조달경위, 범행수법의 광역성. 치밀·흉포성등 '범행수법'을 추가함이 타당
 - ▶ 불법수익의 은닉등 '불법수익의 몰수 여부'를 추가함이 타당
 - ▶ 일반감경인자로 '일반적 수사협조' 외에 '범죄자의 체포경위', '자 수여부', '체포과정에서의 저항정도' 등을 추가함이 타당
 - ▶ 매매・알선 및 수출입・제조 관련 양형인자에 '범죄 이득액' 또는 '수익 규모 기준'을 정해 일정액 이상은 가중요소로 추가함이 타당

아.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

- 대검찰청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제5유형 기본영역 하한 '6년'을 '8년'으로 상향함이 타당
 - ▶ 양형의 전반적 상향조정 필요
 - 제5유형의 기본 하한을 8년으로 상향하고 이에 맞추어 전반적 으로 상향 필요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감경요소로 있으나 그 유형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개념 이 모호하고, 사기범죄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고려해 범죄자의 형 량을 감경하는 것은 부당
 - ▶ 실질적 손해의 규모의 기준 금액 하향 조정 필요
 -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로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작은 경우로 '피해액이 5,000만원 미만' 인 경우로 해석
 - 그러나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 액수를 특정한다 하더라도 그 하한을 낮출 필요성이 있음
 - ► 감경인자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는 삭제 함이 타당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 더라도 이득금액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3유형에 해당되도록 하고 제4, 5유형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

- ▶ 형법 제351조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및 준사기죄(형법 제348조) 이외에 양형기준의 적용대상범죄에서 제외된 편의시설부정이용(형법 제348조의2),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 등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상습사기(형법 제351조)의 경우에는 상습으로 범한 범죄가 사기죄(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및 준사기죄(형법 제348조)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이 타당
 - "상습사기(형법 제351조. 다만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 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 만큼, 유사수신과 결합 된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설명 이 필요
- ▶ 일반사기의 제1유형은 피해금액 1억 원 미만의 경우로 되어 있는데, "피해금액이 경미한 경우"는 특별양형인자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고려되어 있지 않은데 "피해금액이 경미한 경우"를 양 형인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 사기범죄 유형 중 조직적 사기의 예로 투자유치를 가장한 유사수 신 사기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 제3유형의 기본영역을 '2년 ~ 5년 6개월'로 수정하여 제2유형의 기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를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필요
- ▶ 제4유형의 기본영역을 '4년 ~ 7년'으로, 제5유형의 기본영역을 '5 년 ~ 9년'으로 수정함이 타당
- ▶ 사기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그 유형이 다종·다양함에도 모든 사기범죄의 유형을 일괄하여 이득액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용사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여러 유형별로 기준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 특히 사견으로는 사기죄의 경우 기망방법이나 피해자의 수도 이득액에 못지않은 중요

양형인자로 판단하고 있는데,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1명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사기한 경우 양형기준이 '3년~6년'인데, 인터넷 쇼핑몰 물품대금 사기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를 상대로 소액(편취액 합계 1억원 미만)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 다수의 가중영역을 고려하더라도 양형기준이 '1년~2년 6월'이라서 더 약한 처벌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임

- ▶ 사기죄는 그 범죄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므로 단순히 이득금액만으로 형량범위를 설정할 수 없고 그 이외의 범행수법, 고의의 확정성, 피해변제의 정도 등 주요한 양형인자를 바탕으로 형을 양정할수 있어야 함
- ► 따라서 형량범위의 폭을 현행 방안보다 더 넓혀서 하한과 상한의 차이를 4년 정도로 벌리는 것이 타당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일반사기에도 조직적인 사기와 동일하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감경 인자로 규정함이 타당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보는 것은 부당
 -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를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피해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피해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이득액의 약 2/3 이상을 어떠한 명목으로든 반환하거나 반환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 변경함이 타당
 - ▶ 감경요소 중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분을 삭제하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 가중요소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저지른 경우'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저지른 경우'를 삭제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만으로 규정함이 타당

- 양형인자의 정의에 대한 의견
 - ▶ 가중요소로 규정된 '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의 정의인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 피해회복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의견
 - ▶ 집행유예의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인 사유로 다른 범죄들과 달리 사기범죄의 경우에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특별히 추가하는 것은 부당
- 대한법무사협회
 - 찬성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조직적 사기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양형기준의 명확성, 단순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바, 조직적 사기를 가중적 범죄유형으로 설정 하는 것보다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
 - ▶ 조직적 사기의 경우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상향조정 되어 부당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인 '상습성의 발현'이 포괄일죄인 상습사 기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인지, 실체적 경합범인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불명확

자. 사문서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

- 대검찰청
 - 의견 없음

-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대한 의견
 - ▶ 공문서 및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은 개별적 양형기준 설정을 통해 위 각 범죄유형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에는 동의하나, 세부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특별가중양형인자인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는 다수범죄 처리기준과의 관계에서 적용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동일한 사유에 기하여 책임이 이중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 재검토 필요
 - ▶ 사문서 위·변조의 감경요소인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를 삭제함이 타당하 다는 의견 있음
 - ▶ 가중요소인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 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있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대한 의견
 - ▶ 공문서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나. 다만, 위·변조 등을 행한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함으로써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항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않고 일반가중인자로 취급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문서범죄에는 문서위조 등 범죄와 그 행사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문서범죄와 동일하게 위와 같이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
-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의견
 - ▶ '허위진단서등 작성'과 관련한 집행유예의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

인 사유에 "진지한 반성 없음"을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인 사유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

○ 대한법무사협회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범죄에 있어 특별 또는 일반양형인자를 더 발견하여 추가함이 타당
 - ▶ 감경요소로 '가족간 부동산 관련 권리 환원'을 추가함이 타당
 - ▶ 가중요소로 '직계존속,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사문서 위조'를 추가함이 타당

○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 형종 및 형량에 대한 의견
 - ▶ 허위진단서등작성죄의 형량범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일하게 설정한 것은 부당
-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 전반적으로 찬성

차. 기타 의견

○ 대검찰청

- 형량범위내 기준점 설정 필요
 - ▶ 현행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폭은 2년 내지 4년으로 비교적 넓은 편이며, 특별조정영역이나 다수범죄의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폭이 10년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넓은 형량범위로 인해 구형량의 결정이 나 선고형량의 양형부당 판단에 혼란 초래
 - ▶ 특별양형인자는 권고형량범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 본영역을 기준으로 가중인자가 많으면 가중영역으로, 감경인자가 많으면 감경영역으로 각각 이동한다고 설명이 가능하나, 일반양형

인자는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 도 형량범위 내에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기준 없는 가중과 감 경"의 의미 자체가 혼란 초래

- ▶ 따라서 형량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가중인자
 와 감경인자의 수를 비교하여 가중 또는 감경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에도 부합
- 양형인자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설정 필요
 - ▶ 현행 양형기준은 양형인자를 단순히 나열하고 각 특별양형인자 또는 일반양형인자의 평가에 있어 이를 1:1로 동등한 가치를 두고 그 인자 수에 따라 형량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양형인자의 중요도에 따라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인자별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으로 양형기준 수정 필요
 - ▶ 특히 '범죄전력'의 경우, 더욱 중요한 양형인자로 가중치를 두어 취급할 필요 있으나, 현행 양형기준은 '범죄전력'을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어 부당
- 권고형량범위의 규범적 상향조정 필요
 - ▶ 권고 형량범위는 법정형, 과거 양형,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적 평가 등을 기초로 하여 재평가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수정 필요
- 모든 범죄군별로 별도의 '동종'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 있음

IV. 전문위원 업무지원

- 운영지원단(기획운영과, 통계분석과)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 료를 준비하는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회의 현황

회의명	Ħ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네36차	2011. 1. 28. 14:00	○ 2011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작성 ○ 제4차 공청회 제기 쟁점에 관한 검토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의견

순번	접수일자		사	의견요지
1	2010.	12.	31.	○ 상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을 알고 싶다는 의견
2	2011.	1.	8.	○ 상해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질의와 양형위원회의 친절 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의견
3	2011.	1.	20.	○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자신의 반대의견 제시
4	2011.	1.	24.	○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자신의 반대의견 제시
5	2011.	1.	28.	○ 살인범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경하다는 의견 제시

○ 처리결과

-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람후 종결 처리
- 상해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문의에 관하여는 향후 양형기준을 설정할 예정임을 회신

2. 서면 질의 및 회신

○ 서면질의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1.	1. 6.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과 형량범위에 대한 질의
2	2011.	1. 21	○ 사기범죄, 절도범죄의 양형기준 문의
3	2011.	1. 21.	○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과 제조는 그 죄질과 범죄의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부당 하므로 수출입과 제조는 양형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

○ 회신결과

-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람후 종결 처리
-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과 제조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설정하는데 참조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